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제2차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해양경찰청장

관련근거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및 제10조(신규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5조(시험의 방법),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등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규모 : 3개 분야 25명 채용

계	경위	경장		순경		
	헬기조종	해경학과 【10】		외국어(중어) 【10】		
		항해	기관			
25	본청	본청	본청	중부청	서해청	제주청
	5	6	4	4	4	2

※ 경력채용분야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2. 시험 절차 및 일정

원서 접수	쫓 분야	4.20.(목) ~ 5.1.(월) <11일간>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kcg.go.kr
-------	------	---

절차	분야		시험방법	시험일정(예정)	장소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경위	헬 기 조 종	실기(기능)	5.8.(월) ~ 5.12.(금)	사천	5.16.(화)
	경장	해 경 학 과	필 기	6.17.(토)	부산	6.23.(금)
	순경	외 국 어 (중 어)	필 기	5.20.(토)	서울	6.9.(금)
			실기(구술)	6.24.(토)	서울	7.3.(월)

절차	분 야		시험방법	시험일정(예정)	장소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경위	헬 기 조 종	적성·신체 검 사	7.15.(토)	부산	신체·체력검사 불합격자 현장고지
	경장	해 경 학 과	적성·신체· 체 력 검 사	· 적성검사 : 7.15.(토)		
	순경	외 국 어 (중 어)		· 신체·체력검사 : 7.17.(월) ~7.19.(수)		
3차 시험	소 분야		서류 전형	7.26.(수) ~7.27.(목)	본청, 응시 지방청	불합격자 개별통지
4차 시험	소 분야		면 접	8.8.(화) ~8.10.(목)	본청, 응시 지방청	8.24.(목) 최종합격자 발표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및 장소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

※ 시험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17:00경**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 합격자 발표시간 관련 문의전화는 지양바랍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붙임2 참고>

- 최종시험예정일('23. 8. 8.) 기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별표3]

채용분야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헬 기 조 종	경 위	23세 이상 45세 이하	'77. 1. 1. ~ '00. 12. 31.
해 경 학 과	경 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82. 1. 1. ~ '03. 12. 31.
외국어(중어)	순 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82. 1. 1. ~ '05. 12. 31.

※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관련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병역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복무 중인 사람(현역) 중 「임용유예」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는 교육원 입교예정일('23. 10. 7.) 전까지 전역이 가능해야 하며, 전역불가 시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색 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함.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함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가능)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145 ~ 90mmHg 범위에 있어야 함)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가능)

라. 분야별 응시자격

-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경우 경력계산 시 최종시험예정일('23. 8. 8.)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1호)
- 경력계산,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3. 8. 8.)을 기준으로 함
(참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계급	분야	응시자격		
경위	헬기 조종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fcc;">응시 요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헬리콥터 다발) 자격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소지자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시간 1,000시간 이상(모의비행장치 시간 제외)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td> </tr> </table>	응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헬리콥터 다발) 자격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소지자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응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헬리콥터 다발) 자격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소지자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시간 1,000시간 이상(모의비행장치 시간 제외)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계급	분야	응시자격	
경장	해경 학과	※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전문지식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3 참고>
순경	외국어 (중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학 위	○ 중국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학위에 한함) * 주전공 및 복수전공만 인정(부전공 미인정) * 유사학과는 해당 학교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및 해당 언어 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 자격요건 인정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양식 별첨>
		<관련 학위>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교육과 등	
		자격증	○ 新BCT(B) 241점 이상 보유자 ○ 新BCT(B) L&R 801점 이상 보유자 ○ 新HSK 6급 190점 이상 보유자 ○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보유자 ○ FLEX(듣기, 읽기) 총점 850점 이상 보유자 * 면접시험일('23.8.8.) 기준 2년 이내 자격증에 한함

4.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8조, 제32조·제33조)

분야		평가방법	내용
경위	헬기 조종	기능실기	○ 헬기 운항 능력(시뮬레이터 활용) * 직무관련 구술평가도 포함 <붙임4 참고>
경장	해경학과	객관식 필기 (과목당 20문항)	항해 ○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형사법, 항해술
			기관 ○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형사법, 기관술
순경	외국어(중어)	서술형 필기 (5문항, 90분)	○ 중국어↔한국어 번역 능력 * 주어진 문장을 이해하여 중국어는 한국어로(2문항), 한국어는 중국어로(3문항) 번역하여 문장을 완성
		구술실기	○ 중국어↔한국어 통역 등 회화능력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범위

- 형사법 : 형법 전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공소제기, 소송주체, 공판, 상소 분야 제외)
- 해양경찰학개론 : <붙임5 참고>

※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

-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선정
- (헬기조종)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해경학과)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외국어_중어) [필기]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실기] 필기시험 합격자 중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총원

나. 2차 시험 (적성·신체·체력)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8조·제29조)

○ 종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적성 검증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신체검사 <붙임6 참고>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 결정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체력검사 <붙임7 참고> ※ 경위 이상 경력채용 분야는 체력검사 미 실시

- 총 5종목 실시 : ① 100 m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좌우악력, ⑤ 50 m 수영(Pass or Fail)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40점)의 40%(1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① ~ ④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거나 ⑤ 종목에서 기준(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도핑테스트 : 응시자의 5% 내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 <붙임8 참고>

다. 3차 시험 (서류전형)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일까지 갖추어지거나 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류로 판단 가능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가산점 해당 여부 판단
 - ※ 인정되는 가산점수는 '23.7.31.(월)~8.1.(화) 간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개인별 점수 공개 후 수정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공개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 응시자 필수서류(전형별 합격자 제출서류 포함)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라. 4차 시험 (면접)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30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10점),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 및 발전가능성(10점)
- 면접평가(2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이상(1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단계별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 처리

마. 시험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기재

구 분	적용범위 및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실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임용예정계급이 경위 이하인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8])

※ 헬기조종, 해경학과, 외국어(중어)_중부청·서해청 분야에만 적용
<외국어(중어)_제주청 적용 제외>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 항목 및 가산비율을 표기한 사람만 적용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각 과목(필기시험·항목(실기시험·체력검사·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는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 등에 확인 후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 불가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붙임9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5]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 취득 가능
- 응시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가산 자격증은 별도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격증 중 최종 시험예정일('23. 8. 8.)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사본 등)만 인정
 - ※ 자격증 발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갱신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인정
- 가산 자격증 중 어학능력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23. 8. 8.)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항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반영비율
헬기조종	실기 75%, 면접 25%
해경학과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외국어(중어)	필기 30%, 실기 35%, 체력 10%, 면접 25%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필기 → ③ 실기 → ④ 면접 → ⑤ 체력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 <붙임10 참고>

5. 원서접수

가. 기간

○ 2023. 4. 20. (목) 17:00 ~ 5. 1. (월) 16:00 <11일간>

※ 응시표는 2023. 5. 5.(금) 10:00부터 출력 가능

나. 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 수정 가능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 원서작성 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 사이트 참고

○ 응시수수료는 경위 7,000원, 경장·순경 5,000원이며,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기재, 관련 사실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
 ▶ 절차: ① 증빙서 제출안내(개인메일) → ② 1차 시험 후 조회 → ③ 등록된 본인 계좌로 반환

다. 취소 (참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5조)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2023. 5. 4.(목) 18:00)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반환(2~3주 후 전자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수수료 환불)

라.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험 전형별 신분확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안내

가. 1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 예정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없음

나. 별도 공지된 서류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전형의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

다.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 반환 가능.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 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 한 달간('23. 8. 24. ~ 9. 23.)

7. 교육 및 임용

가. 2023. 10. 7.(토)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예정)

※ 교육원 입교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 사유에 따라 최종합격 취소 가능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나.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입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

8. 유의사항

- 가.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문 기재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나. 합격자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 따른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위반자 포함 <붙임8>
- 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하여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신분증 외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역(본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중복 응시는 불가합니다.
- 바. 채용시험 전형 중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목이 나누어진 실기시험은 전(前) 단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사.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cg.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

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색약(약도)자의 경우 경찰병원,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9호]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추가합격자 선정기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마감일(9.15.) ~ 일주일 간(9.21.)

타.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파.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또는 응시 지방청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담당관 : 032-835-2336, 2436, 2636, 2736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032-728-8916, 8716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061-288-2521, 2416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051-663-2416, 2616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064-801-2416, 262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경위	5명	헬기조종	지방청 항공단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임무에 투입되는 항공기 조종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순찰,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시험비행 및 교육훈련 등 - 그 밖에 항공기 운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경찰관으로서 해양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이를 항공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회전익항공기를 조종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순찰,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시험비행 및 교육훈련 등 ○ 상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항관리 및 항공안전업무 수행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관련 전문지식 및 항공안전 분야 지식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항공기상, 항공교통관제 관련 지식 및 영문 교범 해석 능력 ○ 해양경찰 임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비행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

응시 자격 요건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응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헬리콥터 다발) 자격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소지자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 헬리콥터 조종시간 1,000시간 이상(모의비행장치 시간 제외)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경장	6명	해경학과_항해	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 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해양수색 구조, 연안안전관리, 해상질서유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진압)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항해 장비 운용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능력 ○ 상황인식/판단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장비 사용법 ○ 해사관계법령, 해양법 관련 지식 ○ 지문항법, 전파항법 등 항해에 관한 지식 ○ 함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함정운용 관련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p>※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문지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 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3 참고> </td> </tr> </table>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 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3 참고>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 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3 참고>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경장	4명	해경학과_기관	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 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해양수색 구조, 연안안전관리, 해상질서유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진압)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함정 기관(주·보조기관) 유지·보수 능력, 기관 장비 운용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능력 ○ 상황인식/판단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함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p>※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문지식</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 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3 참고> </td> </tr> </table>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 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3 참고>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 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3 참고>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순경	10명	외국어(중국어)	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 소속부서 포함)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중국) 해양치안기관과 교류협력 업무 ○ 국제범죄 첩보수집 및 검거 활동 ○ 불법외국어선 단속(통역) 및 상황처리 ○ 기타 외국(중국) 관련 해양치안활동 업무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분야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분석력, 이해력, 집행관리 능력, 조정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선발대상 언어(중국어) 구사능력(말하기/듣기/쓰기) ○ 국제(중국) 해양환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	--

응시 자격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학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학위에 한함) * 주전공 및 복수전공만 인정(부전공 미인정) * 유사학과는 해당 학교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및 해당 언어 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 자격요건 인정 <p><관련 학위>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 교육과 등</p>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BCT(B) 241점 이상 보유자 ○ 新BCT(B) L&R 801점 이상 보유자 ○ 新HSK 6급 190점 이상 보유자 ○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보유자 ○ FLEX(듣기, 읽기) 총점 850점 이상 보유자 <p>* 면접시험일('23.8.8.) 기준 2년 이내 자격증에 한함</p>

○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

인 정 과 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해사법규,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양수사(외사를 포함한다)론, 해양정보론, 해양치안정책론, 해양오염방제론, 선박운용론, 해양경찰영어, 해사영어, 선박일반(항해·기관), 내연기관, 보조기계, 수산법규, 수산학개론, 어구·어법·어로학, 어장학, 인명구조학(수영을 포함한다), 전기전자, 전파통신공학, 무도학(체포술을 포함한다), 해양법, 헌법, 항해학, 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항해실습, 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범죄학, 해양기상학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인정과목	경찰영어, 국제법, 내연기관, 보조기계, 비교해양경찰론, 선박운용론, 선박일반, 수산법규, 수산학개론, 어구.어법.어로학, 어장학, 인명구조(수영포함), 전기전자, 전파통신공학, 전파항해, 지문항해, 체포술(무도포함),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양경비론,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찰사, 해양경찰학, 해양방제론, 해양법, 해양수사론(외사포함), 해양안전론, 해양정보론, 해양치안정책론, 행정법, 행정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2]

인정과목	유 사 과 목
경찰영어	
국제법	
내연기관	내연기관설계, 기관실무기초, 기본기관학, 기관(공)학개론, 기관관리 및 안전
보조기계	선박보조기계,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및 연습, 선박기계시스템개론, 기계요소설계, 기계제도 및 CAD, 기계공학개론
비교해양경찰론	비교경찰사, 한국경찰사
선박(함정)운용론	선박조종론(학), 선박운용학, 함정운용론, 선박정비론, 선박운용 및 적부, 적화 및 복원성, 선박조종실무, 조타훈련 및 실습
선박일반	
수산법규	수산법제

인정과목	유 사 과 목
수산학개론	수산행정관리론, 수산일반, 수산자원학, 수산경영개론, 해양생산학개론
어구·어법·어로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전산어구설계, 어업관리학, 어로관리론, 어업기계공학, 어업정보학, 어획물처리 및 적부 연근해어업론, 원양어업론, 국제어업론, 해양생산기구(기)학 해양생산물처리학, 해양생산기구공학, 어업계측공학
어장학	해양어장환경학, 해양학, 해양동물학, 어장탐사공학, 어장정보처리
인명구조(수영포함)	해양생존 및 인명구조,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 인명구조 및 실습, 스포츠수영, 해상안전실습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시퀀스제어, 선박전기·전자공학, 자동제어
전파통신공학	무선(해상)통신공학, GMDSS(통신)운용, 전파법규
전파항해	전파전자항해, 전자항해, 알파 및 레이더항(해)법, 항해계기학, 항해시스템, 항법시스템공학개론, 항해계측공학, 항해계기 및 실습
지문항해	지문천문항해, 항로표지론, 기본항해학
체포술(무도포함)	무도(술), 무도학실습, 경찰무술 I ~ II
해사법규	
해사영어	기관영어
해양경비론	수색구조론
해양경찰경무론	(경찰)조직관리론, (경찰)인사관리론
해양경찰사	
해양경찰학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연습
해양방제론	해양오염방제(지)론, 해양오염방지협약,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공학
해양법	국제해사법, 국제해사협약
해양수사론 (외사포함)	해사수사론, 경찰수사론, (범죄)수사학, 범죄학, 해양범죄(수사)론, 해양경찰외사론, 범죄학개론, 범죄예방론
해양안전론	해상교통안전보안, 해상교통법(공학), 선박검사론, 해상충돌예방규칙, 해상교통관리론, 해사정보시스템 및 실습, 해상교통실무, 해상안전공학, 해양안전학개론, 해사안전정책학, 수상안전관리학, 연안교통관리학, 레이더시뮬레이션, 해양사고처리론, 선박안전론
해양정보론	해양정보처리, 해사정보론, 해사정보처리시스템, 수중정보처리실습
해양치안정책론	
행정법	경찰행정법, 행정구제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학	행정학개론, 행정학의 이해
헌법	헌법 I ~ II, 헌법개론, 헌법총론
형법	형법 I ~ III,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정책, 형사법연습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I, 형사소송법II

○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

- ▶ 인정과목과 유사과목 모두를 인정하나,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음.
(ex/ '내연기관'과 '기관학개론'을 모두 수강한 경우 한 과목만 인정)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인정(유사)과목				인정(유사)과목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총	학점

위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및 유사과목 00학점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 **동일 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

- ▶ 인정·유사과목의 과목명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 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추가 제출

동일 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이 아래와 같이 이수한 과목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과목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니,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동일과목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연번	인정과목명	유사과목명	이수과목명	학점	성적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붙임4

헬기조종 실기시험 평가방법 및 기준

○ 헬기조종 평가방법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기능실기 *구술포함	헬기조종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순찰 ▶ 항공 수색 및 구조 ▶ 함상 이·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비행술 ▶ 함상 이·착함 절차 ▶ 계기비행 절차 ▶ 항공실무능력

○ 헬기조종 기능시험 평가표

헬기조종(경위) 실기시험 평가표						
응시 분야	헬기조종	응시 번호	실기 번호	성명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 : 본인은 상기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생년 월일		
평가내용	배점 기준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제자리비행 수평이동(10점)	0	±5°	±10°	±15°		
	10점	8점	6점	4점		
함상 이함 요령 (500fpm 상승, 60kts도달시 선회)	상승률 (30점)	±100	±200	±300	±400	
		30점	25점	20점	15점	
시계비행 상승,선회 (5점)	고도 (2.5점)	±0'	±50'	±100'	±150'	
		2.5점	2점	1.5점	1점	
	HEADING (2.5점)	±2.5°	±5°	±10°	±20°	
		2.5점	2점	1.5점	1점	
계기비행 수평,강하 (400ft, 100kts) (5점)	고도, 속도 (2.5점)	±0' / ±5	±50' / ±10	±100' / ±20	±150' / ±30	
		2.5점	2점	1.5점	1점	
	HEADING (2.5점)	±2.5°	±5°	±10°	±20°	
		2.5점	2점	1.5점	1점	
함상 착함 요령 (강하율 분당 300fpm)	함정 동조기동 (고도유지) (30점)	±10'	±20'	±30'	±40'	
		30점	25점	20점	15점	
항공실무능력(20점)	항공상식 및 운항관련 실무지식					
	20점	17점	14점	11점		
득점계	100 점				점	
평가위원	계급(직급)		성명	(인)		

목 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념	해양경찰의 의의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비교 해양경찰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법적 토대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해양경찰 작용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행 정	해양경찰 행정관리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변화관리 등
	해양경찰 통제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경 비	해양경비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 선박 단속 등
	작전·위기관리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해양대테러·경호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구조안전	수색구조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해양안전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수상레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레저 사업 등
	해상교통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수사정보	수 사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정 보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보 안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상황 등
	외 사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해양환경	해양오염방제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해양오염예방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가능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13조 제1항 관련)

평가항목	내용	신체검사기준 (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분야	응시번호	성 명		사 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청 력	좌: ()dB
	우: ()			우: ()dB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약물(TBPE)검사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 나. ②란에는 응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 (예: 경감 변호사, 경위 별기조종, 경장 함정요원, 순경 공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개인(결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흡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흡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흡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흡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골리백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寛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식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야 합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하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좌우약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하									
여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하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좌우약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하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약력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약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하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 4]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제13조제1항 관련)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p>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이상</p> <p>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p> <p>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달리게 한다.</p> <p>라. 기록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수기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p>
악 력	<p>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p> <p>나. 실시도구 악력기</p> <p>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p> <p>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 상위 규정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시까지 적용</p>
윗몸일으키기	<p>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p> <p>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이상)</p> <p>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각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3)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갔을 때 1회로 하고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p> <p>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각지를 낀 손이 빠지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p>

팔굽혀펴기	<p>가. 검사요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 3) 검사원 1명이상 <p>나. 실시도구</p> <p>매트, 계측기(1대이상)</p> <p>다. 측정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붕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p>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p>
수영	<p>가. 검사요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측원 1명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이상 <p>나. 시설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m 수영장 (25m 수영장 왕복 가능) 2) 초시계(1개이상) 3) 출발신호기 1개 <p>다. 측정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영장 레인을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p>라. 기록</p> <p>계측원은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응시자의 신체의 일부가 도착지점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p>

비고 :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평가 진행순서) 약력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100m 달리기 - 수영

▶ (유의사항)

가. 현장 사정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측정방법 및 진행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구체적인 평가방법(변경사항 등) 및 유의사항은 체력검사 당일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현장 안내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2019.1.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갈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참고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 ▶ www.kada-ad.or.kr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 기타, 직업 : 기타
- ▶ www.kimsonline.co.kr
- ▶ www.druginfo.co.kr

I.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판정기준

약물군	약물 성분	판정기준	단위
동화작용제	drostanolone	검출 시	
	methenolone	검출 시	
	methasterone	검출 시	
	testosterone	검출 시	비고참조
	1-testosterone	검출 시	
	clenbuterol	검출 시	
	stanozolol	검출 시	
이뇨제	hydrochlorothiazide	검출 시	
	chlorothiazide	검출 시	
	furosemide	검출 시	
흥분제	methylhexanamine	검출 시	
	methylephedrine	> 10	μg/ml
	ephedrine	> 10	μg/ml
마약류	Buprenorphine	검출 시	
	dextromoramide	검출 시	
	diamorphine(heroin)	검출 시	
	fentanyl	검출 시	
	hydromorphone	검출 시	
	methadone	검출 시	
	morphine	검출 시	
	oxycodone	검출 시	
	oxymorphone	검출 시	
	pentazocine	검출 시	
	pethidine	검출 시	

※ 비고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신체발육 및 필수대사에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인체 내에서 일정량이 생성(내인성)되며, 인체에서 대사되어 에피테스토스테론(Epitestosterone)으로 변화하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테스토스테론과 에피테스토스테론의 비율(T/E ratio)은 1:1임. T/E ratio가 4:1 초과시에는 외부로부터 외인성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투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II.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이상	- 무도 1·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전자기기 기능장 -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정보통신· 방송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정보통신· 통신선로·방송통신 산업기사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통신선로· 통신기기·방송통신 기능사
사무관리	-	-	-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기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산업 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	- 인명구조요원강사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분야	점수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
레 저	-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 산·어 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로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 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 처리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 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1)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가라테연맹 - 대한택견회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주짓수회 - 대한크라쉬연맹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9)	- 대한기도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대한용무도협회 - 대한합기도총연맹 - 대한합기도총협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합기도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대한중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해동검도협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무에타이협회 - (사)한국권투협회 '23.1.27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민국의합기도중앙협회 - (사)한국킥복싱협회 신규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대한특전무술협회 인정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민국의합기도회 - 경찰무도교육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ITF태권도협회 - 한국무예진흥원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23.1.27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의합기도무술협회 - 신대한기도합기도무술협회 인정 - 재남무술원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한국복싱협회 취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세계합기도연맹
무예 분야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 택견보존회

※ '23.1.27 이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단체(5)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한국복싱협회, 세계합기도연맹

※ '23.1.27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단체(4) : (사)한국권투협회, (사)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경찰무도교육원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35-4612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대한래프팅협회	033-461-0737	(사)대한워터스포츠협회	032-770-1069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 '18.11.10 지정취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23.1.16. 지정취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지정취소	02-422-6119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고객센터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ex)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9.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 인정 X

1 임용유예 신청

- **관련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 **임용유예 신청 대상** : 신규채용(공채·경채 무관) 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 **(적용 대상)** 채용시험 합격 후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어 교육원 입교 예정인 자
 - *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제출로 등록되며, 「채용후보자등록원서」 미제출자는 **임용포기로 간주**
 - **(신청 방법)**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시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와 「임용유예 신청서 +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 ※ **입교 후에는 신청불가**
- **임용유예 기간** :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내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으나, 신임교육기간(8개월) 감안, 실질적으로 1년 내외 가능*
 - * 유동적인 입교일정 감안, 신임교육이 연 2회 실시되는 경우 → '당초 입교일 부터 차차기 입교일' 까지, 신임교육이 연 3회인 경우 '당초 입교일부터 차차차기 입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임용유예 규모** :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청별 채용인원(임용예정 계급별)의 5% 범위 내외 가능
 - * 본청 채용자(경정 공채·간부후보생 등)의 경우,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외 가능
- **임용유예 사유** :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사항 >

구 분	관련 근거	적용 대상	신청 절차	사 유	기 간	비고
임용 유예	「해양경찰 임용규정」 <대통령령>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 신청 <신임교육 입교 前>	① 병역복무 ② 학업 ③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 인정	2년	임용권자
차기 입교	「해양경찰 교육원 학칙」 <교육원 예규>	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학생	교육 중 사유 발생 시 신청 <신임교육 입교 後>	① 질병 ②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③ 가족사망 등 ④ 추가 합격통보* 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2년	교육원장

* **추가합격통보**를 받고 입교일로부터 7일 이내 입교 불가 시 **차기입교자**로 분류될 수 있음

2

주요 임용유예 상세 요건

□ 병역복무를 위한 임용유예 : 제1호 및 제5호 적용

○ 제1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구분	주요 내용
상세 요건	① 군 未필자(「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자)가 ②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에 ③ 「병역법」상의 의무복무*(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단기 복무장교·부사관 포함)를 시작하는 경우 * 현역병 입대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보충역
효과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병역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하지 아니함(「경찰공무원법」 제12조 제4항) * 제대 후에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이 그대로 유효하여, 학업의 계속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 신청 가능

○ 제5호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주요 내용
상세 요건	① 병역법상 의무복무자가 병역복무 도중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② 「병역법」이 아닌, 「군인사법」에 따른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同 군 복무 중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 군 장학생 출신의 장교복무, 학사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군 복무
효과	위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 가능

□ **학업의 계속을 위한 임용유예 : 제2호 적용**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2년) 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임용유예를 인정할 학업의 진행 정도) 적용

구분	주요 내용
상세 요건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인 자*로 ②그 학업의 계속**을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은 임용유예 불가하며, 새롭게 대학·대학원(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불가, ** 휴학·어학연수 시 학업의 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임용유예 해제 ②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당연 허용
효과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하는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 가능

□ **장기요양(6개월 이상)이 필요한 질병을 위한 임용유예 : 제3호 적용**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

□ **임신·출산을 위한 임용유예 : 제4호 적용**

- 임신확인서 및 출산(예정)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

3 임용유예 심사 기준

❖ 임용유예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결과는 **입교일 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심사기준(인원조정 기준)**

- 본청·지방청별 채용인원(임용예정 계급별)의 5% 초과하여 **임용유예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임용유예 허용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현장 충원을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외로 허용 가능

4

임용유예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임용유예 신청서(서식 1)와 함께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	내 용	증빙서류
제1호 (또는 제5호)	병역복무 사유 임용유예	① 입대 전 또는 복무 중에는 '입영 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 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 ② 전역 후에는 병역 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1부 제출
제2호	학업의 계속	① 재학·휴학·재적증명서 등 지금의 학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② 졸업학점과 현재까지 이수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함께 제출 * 현재 휴학 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복학하여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3호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4호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임신헌인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등
제5호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연장** : 임용유예 중인 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임용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임용유예 연장 신청(다른 사유로 추가 신청 포함)
 - 임용유예 연장(다른 사유로 인한 추가 신청 포함)이 가능한 경우
 - ▶ 현재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기존 6개월 정도 임용유예(학업·출산·질병 등)를 한 자가 다른 사유로 연장 및 추가신청을 원하는 경우(최대 기간인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 고려 필요)
 - 임용유예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2호부터 5호까지에 따라 임용유예를 1년 신청하여 그 기간이 끝나가는 자
 - ▶ 이미 1년 임용유예를 한 경우, 남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에 신임교육을 마치고 임용까지 해야 하므로 연장 불가
- **철회** : 임용유예 중인 자는 임용유예 사유 소멸 즉시, 또는 임용유예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철회 신청서’ 제출
 - ▶ 철회 후 차기 신임교육 일정에 따라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취소**
 - (임용유예 취소) 임용유예 목적 외 사용 적발, 채용후보자 명부 삭제 사유를 제외한 범죄 행위 적발, 기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용후보자 명부 삭제)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또는 「해양경찰청 임용규정」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해당할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교육 입교 및 대기

-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임용유예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대상자는 신임교육 입교를 위해 대기**
 - ▶ 임용유예가 소멸한 때에 **입교 명령에 즉시 응하지 않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 임용유예자는 채용후보자 신분을 가지므로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기준 적용

Q.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학업의 계속,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6개월 이상),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와 함께 임용유예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인력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신청의 사유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추후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임교육 등 일정을 고려하여 심사

Q.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 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을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임교육 일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약 1년 내외의 기간 만큼 임용유예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수해야 할 학기가 남았다면, 임용 후 연수휴직을 통해 학업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다만,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해양경찰청에서 선발하는 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인력운용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임용유예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임용유예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초임 발령일이 늦춰지는 만큼 당연히 재직기간을 반영하는 인사(승진, 전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최종 합격 후 대학원 진학 등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학업의 계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유예 승인이 어렵습니다.

Q.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자의 경우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징집·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위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 입대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보충역 등의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을 말합니다.

Q. ROTC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하는 경우 병역 의무복무로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A.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 복무장교의 경우에는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경찰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기간은 공무원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제가 군 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군 입대 전에 합격하고 군 복무를 사유로 7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A. 대학교 재학 중에 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군 장학생의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계산에 포함되며,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용유예 5호(기타 부득이한 사유) 적용>

Q. 가정 주부입니다. 육아를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 할 수 있나요?

A.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과 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따라서 육아를 위해서는 임용유예가 불가하며, 임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Q. 현재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올해 합격하고 남은 복무기간 5년 동안 임용유예가 가능하나요?

A.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이 「군인사법」에 의한 군 복무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 시, 남은 군 복무기간이 5년인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잔여 군 복무기간이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5호(기타 부득이한 사유) 적용>

Q.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년엔 군에 다녀와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임용유예 기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승인되나, 「병역법」상의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군 복무 후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다시 임용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1호 적용(징집·소집) ○ + 임용유예 2호 적용(학업의 계속) ○>

다만, 임용유예는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한학기가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사이버 수업 중입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학기 재학 중이므로 임용유예 신청 사유는 되나, 학교에 따라 사이버 강의 활용·야간수업 전환 등 충분히 임용 후에도 학업을 완료 할 수 있을 경우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졸업 시까지 남은 학기가 1학기(6개월)인 경우 임용유예는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까지 가능한가요?

A.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1학기만 남은 상황에서 그 이상의 기간인 1년을 임용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임용유예가 될 소지가 있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6개월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Q.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 연수를 다녀오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A.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유예 기간은 유예사유(학업의 계속)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방송통신대 재학생의 경우에도 임용유예가 가능한지?

A. 학업의 계속에 따른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해 학교 출석을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정기간 임용을 유예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의 경우 대부분 기간 동안 출석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이 학업의 계속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어 임용유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야간대학의 수업은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Q.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용유예 제도의 취지상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즉시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